



교통사고 발생으로 치료가 종결된 후 향후 치료비 및 치료비 과실상계

1.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 발생 후 치료가 종결되어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흉터가 남아 있는지 수술부위의 편을 빼야할 것이 남아 있는지 등 아직 치료비가 필요한데 합의 당시에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이러한 치료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고 종결하고자 할 때 앞으로 발생시켜야 할 치료비용을 전부 향후 치료비라고 한다.

가. 핀 제거비용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여 몸안에 핀 또는 고정기구가 들어있을 때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이물질은 피해자의 몸에서 빼내는데 들어가는 치료비용이다.

핀이나 고정기구를 굳이 빼내지 않아도 일상 생활하는데 의학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제거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하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교통사고는 손해배상이고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라도 제거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몸안에 고정기구를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고정기구를 제거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그 제거 비용을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성형수술비용

성형수술비는 안면부, 상지, 하지 등 외부 노출 부

위로써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피해자가 성형외과에서 직접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성형비용』으로 필요 타당한 금액을 인정한다.
- ② 통상 성형은 상처가 아무는데 수술 후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성형비용으로 추정하여 합의금 지급시 종결되는 것이 통상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후라도 직접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일차 시행한 후에 향후 성형비용으로 보험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아, 아동의 경우

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발육이 완성되는 12~13세가 되는 때까지는 완벽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향후 성형비용 추정서』를 성형외과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와 합의 절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성형수술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직접 병원에서 수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2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 등의 경우

노출 부위의 경우 성형외과에서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시행한 후 남은 흉터에 대하여 『향후 성형비용 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 절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여 상처가 교통사고 발생 전과 같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노출부위에는 최대한의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본 후 그래도 남게되는 흉터에 대하여 향후 성형비용으로 추정하여 합의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동의 경우 성형 추정 비용 산출 사례

8살된 여자아이로 학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있어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이 사건 흉터로 인한 장해는 보험회사 지급기준으로는 없으므로 위자료 12급에 해당하는 8만원 밖에 보상받을 것이 없다.

물론 2개월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치료 받는 기간 부모가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흉터에 대한 성형비용인데 피해자 나이 10살이고 성형수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의 발육이 되는 13살 이상이 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 5년은 더 기다렸다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버리게 되어 5년 후에는 보험회사에 성형수술을 청구할 권리도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향후 성형추정비용”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절충하여 지급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으나 이 것이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피해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아 있는 흉터가 심한 경우 소송하면 “추정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형추정비용도 자동차 보험수가가 아닌 대학병원의 수가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치아보철비용의 계산

- ① 금 주조관 보철(백금관 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위 교통사고 전에도 치아 보철을 하였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 ③ 교통사고로 새로이 보철을 하게 되는 경우

■ 최초 보철에 들어가는 비용과 남은 여명기간 동안 향후 10년마다 1회씩 보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 해야 할 보철비용을 현재의 합의 시점에서 『향후 보철비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 기본 보철비용 1대당 129,600원을 기준(97년 기준) (치아보철비용은 보험회사마다 지급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예] 10년 후 1대당 129,600원 × 0.6139 = 79,561원
 20년 후 1대당 129,600원 × 0.3768 = 48,833원
 30년 후 1대당 129,600원 × 0.2313 = 29,976원
 40년 후 1대당 129,600원 × 0.1420 = 18,403원

합계금	176,773원
-----	----------

- ④ 향후 10년 후, 20년 후,..... 보철비용을 현 시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경과 연수에 따르는 이자를 공제하게 되는 관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 ⑤ 치아 상실로 인한 장해 인정

보험회사 지급 기준상으로는 치아가 아무리 많이 상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치아의 상실로 음식을 씹는 기능상의 장해(저작 장해)와 치아의 상실로 말하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장해를 인정해 주고 있다. 

